

2. 제15장(제도·일반 및 최종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15장(제도·일반 및 최종규정)의 개정

[1]. 제15.1조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무역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1년에 한번 회합한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영국의 기업혁신과학통상부장관,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된다. 무역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무역위원회는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교대로 대면 회합하거나 화상으로 회합할 수 있다.”

[2]. 제15.2조제1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다음의 전문위원회가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제2.21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

나. 제5.17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다. 제6.19조(관세위원회)에 따른 관세위원회

라. 제7가.11조(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에 따른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

마. 제11가.4조(혁신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혁신위원회

바. 제11나.6조(공급망회복력위원회)에 따른 공급망회복력위원회

사. 제13.20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그리고

아. 제13가.4조(무역과 양성평등 위원회)에 따른 무역과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임무는 이 협정의 관련되는 장에 정의된다”

[3]. 제15.2조제3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전문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전문위원회는 적절한 급에서 회합하고 한국과 영국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전문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전문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합할 수 있다.”

[4]. 제15.2조제4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4. 전문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전문위원회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제15.3조제1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1. 다음의 작업반이 무역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 제9조(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나. 부속서 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5조(규제 협력)제4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 다. 부속서 2-마(화학물질)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작업반
- 라. 제3.16조(무역구제 협력 작업반)에 따른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 마. 제5.15조(동물복지)에 따른 동물복지 공동작업반
- 바. 제7라.18조(제도적 사항)에 따른 금융서비스 작업반
- 사. 제9.8조(정부조달 작업반)에 따른 정부조달 작업반
- 아. 제10.24조(지리적 표시 작업반)에 따른 지리적 표시 작업반, 그리고
- 자. 제12가.9조(제도적 장치)에 따른 반부패 작업반"

[6]. 제15.3조제3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작업반은 적절한 급에서 회합하고 한국과 영국의 대표가 공동의장이 된다. 작업반은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의제를 정한다. 작업반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합할 수 있다.”

[7]. 제15.3조제4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4. 작업반은 무역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작업반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전문위원회나 무역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8]. 제15.7조(과세)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5.7조

과세조치

1. 이 조의 목적상

A범주 세금이란 직접세를 제외한 모든 과세조치를 말한다.

B범주 세금이란 상속, 유산취득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직접세를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국세청 위원들, 또는 그들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또는 그들의 승계인

직접세란 GATS 제28조가호에 정의된 직접세를 말한다.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 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세금과 과세조치는 소비세를 포함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2.3조(정의)에 정의된 관세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6조(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2.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의 규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그 주해를 포함한다)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제2.1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

나. 제2.17조(수출에 대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다. 제7나.9조(수용 및 보상).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7나.9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7나.9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는 투자자는, 제7나.21조(중재 청구 제기)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투자자의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피청구 당사국에 우선 회부해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에 동의했으나 회부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7나.21조(중재 청구 제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3항에 언급된 규정에 더하여, 다음의 규정은 A범주 세금에 적용된다.

가. 제7가.3조(내국민 대우)

나. 제7가.4조(최혜국 대우)

다. 제7라.3조(내국민 대우)

라. 제7나.5조(내국민 대우), 그리고

마. 제7나.6조(최혜국 대우)

5. 제3항에 언급된 규정에 더하여, 다음의 규정은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와 관련된 B범주 세금에 적용된다.

가. 제7가.3조(내국민 대우), 그리고

나. 제7라.3조(내국민 대우)

다만,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나.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다. 기존 비합치 과세조치의 개정

라. 과세 목적에서 거주지에 기반하여 인들을 구별하는 모든 과세조치를 포함하여,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새로운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다만, 그 과세조치가 양 당사국의 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

지 않아야 한다.¹

마. 연금신탁, 연금계획, 퇴직기금 또는 연금, 퇴직기금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신탁, 계획, 기금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 규제 또는 감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7.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8.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이 협정과 그 조세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양 당사국은 그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9.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하여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최혜국 의무를 적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9]. 제15.8조(국제수지 예외)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5.8조 국제수지 보호 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에 당사국이, 자본의 이동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지불 또는 송금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¹ 양 당사국은 이 호는 GATS 제14조라호가 서비스 또는 직접세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GATS 제14조라호의 각주를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양해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 이동과 관련한 지불 또는 송금이 거시경제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 조치가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가.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은 모든 비당사국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는다.

나.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라 한다)협정」과 합치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다.

마.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바. 필요한 거시경제 조정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려는 경우, 그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할 것이다.

아. 제7나.9조(수용 및 보상)²와 합치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제7나.9조(수용 및 보상)에서 언급된 공익 사유로 당사국이 채택한 비차별적 규제 조치일 수 있다.

자.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IMF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않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상품 무역의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대외 금융 상태 또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하여 수입 제한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1994년도 GATT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야 한다.

4.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대외 금융 상태 또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하여 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WTO 협정에 수립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5. 이 조에 따른 제한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변경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통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조치의 채택, 유지 또는 변경의 근거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다음의 기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조치의 채택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채택 또는 변경일 후 30일, 또는

2) 조치의 유지의 경우,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 30일

6. 이 조에 따른 제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당사국은, 협의가 다른 포럼에서 열리지 않는 한, 그 조치나 그 조치의 모든 연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7. 제6항에 따른 협의는 특히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로 이어진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 어려움을 평가하고 모든 제한 조치의 준수를 다룬다.

가.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의 성격과 범위

나. 대외 경제 및 무역 환경, 그리고

다.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 시정 조치

협의를 제한 조치가 이 조를 준수하는지를 다룬다. 양 당사국은 외환, 통화 보유고 또는 국제수지와 관련되는 IMF가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모든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양 당사국의 결론은 관련 당사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IMF의 평가에 근거한다.”

[10]. 제15.8조의2(일반적 예외)는 제15.8조(국제수지 예외) 및 제15.9조(안보 예외) 사이에 삽입된다.

"제15.8조의2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7-바장(디지털 무역) 및 제2-가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7-가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7-다장(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 제7-라장(금융서비스), 제7-마장(통신) 및 제7-바장(디지털 무역)의 목적상, GATS 제14조의 가호, 나호 및 다호와 그 각주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양해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 및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

나.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에 언급된 조치는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WTO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거나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상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관세 유지 또는 인상을 포함한 의무의 정지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1]. 제15.9조(안보 예외)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5.9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또는 전쟁 도구들의 생산이나 매매에 관련되거나 그 밖의 상품, 재료, 서비스 또는 기술의 생산, 매매 또는 거래를 포함하여, 군사 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경제 활동에 관련된 조치

-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 3)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 4)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방식으로 취해지지 않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 내에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2]. 제15.9조의2(정보 공개)와 제15.9조의3(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영국의 국립보건서비스)은 제15.9조(안보 예외) 다음에 삽입된다.

"제15.9조의2

정보의 공개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국내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보를 받는 당사국은 정보의 공개가 당사국의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15.9조의3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영국의 국립보건 서비스

양 당사국은 이 장, 제7-가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7-나장(투자), 제9장(정부조달), 부속서 9-나(GPA를 초과하는 시장접근 약속), 제10장(지식재산), 부속서 I(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기존의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미래의 비합치 조치)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영국의 국립보건 서비스³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의 배제, 예외 및 관련 규정을 상기한다.”

[13]. 제15.1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5.1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WTO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협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 항은 제14장(분쟁해결) 및 부속서 14-가(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상의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3. 원저프레임워크⁴가 발효⁵ 중인 동안,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영국이 원저프레임워크와 그 개정 및 그 일부를 대체하는 후속협정에 더하여, 조치를 채택 또는 유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국의 국립보건 서비스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국립보건 서비스와 북아일랜드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⁴ 원저프레임워크는 2023년 3월 24일의 영국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연합과 영국의 공동선언 제1/2023호에 규정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⁵ 양 당사국은 원저프레임워크 제18조에 명시된 민주적 동의를 위한 장치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자신들의 적용을 위하여 같은 조들에 의존하고 있는 원저프레임워크의 그 밖의 규정이 제18조에 명시된 장치에 따라 영국에 적용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한다.

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 또는 그러한 조치의 부재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4.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기술된 영국이 채택한 조치 또는 그러한 조치의 부재⁶가 이 협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협의를 개최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구한다.⁷”

[14]. 제15.15조(영역적 적용)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5.15조 영역적 적용

1.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영국에 대하여,

1)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 영국의 영역

2) 영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과 그러한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 채택된 제3항에 기술된 조치 또는 그러한 조치의 부재를 지칭한다.

⁷ 이 항은 제12.4조(질의처 및 접촉선)를 저해하지 않는다.

3) 다음에 대하여, 영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인, 건지(Guernsey) 관할구, 저지(Jersey) 관할구 및 맨섬(Isle of Man) (그에 인접한 영공과 영해를 포함한다)

(가)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나) 제2-가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다)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라) 제6장(통관 및 무역원활화)

(마) 다음을 제외한 제7-나장(투자)

(1) 제7나.4조(시장접근), 그리고

(2)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설립, 인수, 확장에 대하여 제7나.5조(내국민 대우) 및 제7나.6조(최혜국 대우)

2. '영역'이라는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라 양해된다.”

[15]. 제15.15조의2(영역적 확장)와 제15.15조의3(영역적 비적용)은 제15.15조(영역적 적용)의 다음에 삽입된다.

"제15.15조의2 영역적 확장

개정정서의 발효일에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로,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특정한 장은 영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제15.15조의3

영역적 비적용

개정협정의 발효 후 언제라도, 영국은 한국에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특정한 장을 영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에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보를 할 수 있다. 이 비적용은 영국이 한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